

### 사무장병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누구일까요?

의사가 아닌 사람(속칭 ‘사무장’)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(속칭 ‘사무장 병원’)을 개설·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일까요? 사무장일까요?

#### 〈사건의 개요〉

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는 의사 A씨를 고용한 후 A씨 명의를 빌려 00병원을 개설하였고 직원 채용 및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하였습니다. 한편 00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의사 A씨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었지만, 임금이 체불되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 하였습니다.

#### 쟁점

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일까요? 아니면 실제 경영자인 피고일까요?

#### 관련 법률

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의료법 제33조(개설 등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.

1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

## 원심판결

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.

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?

## 대법원 판결

1.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,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에 관하여 판례는 『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,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』(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8다263519 판결)라고 판시하였다.

2.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부(적극)에 관하여 판례는 『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

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.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』(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8다263519 판결)라고 판시하였다.

## 결론

따라서, 이 사건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, **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된다고** 본 것입니다.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임금지급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.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